

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5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다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구역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관련 부대시설 건설을 위하여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 및 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의 매각대금,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조성 지원사업과 기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.

제3조(관리 및 운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4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[조례](#)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관 실·과		도시과
입 안 자	과 장	남 병 국
	담 당	이 상 우
	담 당 자	박 진 영 (480-5432)